

[세무칼럼]

총전과 달라진 최근 예규·판례의 비교 해설

자고 일어나면 새로워지는 현대사회에서 법령으로 모든 사회현상을 명문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특정사항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 집행기관의 유권해석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이는 세법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는 바와 같이 권한이 있는 기관의 해석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 특히 매일같이 새로운 기법과 거래가 창출되는 작금의 경제 흐름에 기존의 유권해석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에 변경된 유권해석 및 심사례 등을 발췌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법인세 세무조정이나 세무이슈의 처리 중에 야기될 수 있는 혼돈을 줄이고자 한다.

1. 공익법인 등의 주식출연비율 계산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전 유권해석	신 유권해석 (재재산-417, 2005.10.18)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주식출연비율 계산시에 자기주식은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몫인 공익사업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공익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는 재산 중 주식에 대하여는, 재벌들이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주식출연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즉,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최근 유권해석<재재산-417, 2005.10.18.>에 의하면, 총전의 유권해석<서면4팀-1544, 2005.8.31>과 달리 ‘당해 내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이로써 내국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여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비율이 변동하던 효과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용 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종전 유권해석	신 유권해석
<p>○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p> <p>-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정세액(*)으로 납부해야 함</p> <p>* 추정세액 : 세액공제액 × (3/10,000) × (공제받은 과세표준 신고일의 익일부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일수)</p>	<p>-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정하지 않음</p> <p>* 임대요건</p> <p>①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위탁업체가 부담할 것</p> <p>② 자산을 위탁업체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토록 할 것</p> <p>③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p>

■ 주요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처분(임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정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0월 25일 이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에게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임대한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당해 자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제조예-398, 2005.11.2>

- ① 위탁업체가 당해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할 것
- ② 수탁가공업체는 당해 자산을 위탁업체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할 것
- ③ 생산된 제품 전량을 위탁업체에 납품할 것

■ 적용시기

2005년 10월 25일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각차손 필요경비 인정 여부(소득세법)

현행 법령(소령 §163, 소칙 §79)	새로운 판례 (대법2005두1954, 2006.1.13.)
<p>○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경우</p> <p>- 금융기관 등(*)에 매각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p> <p>* 금융기관 등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002. 4. 13. 시행규칙 개정시 추가)</p>	<p>-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p> <p>* 다만,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금액은 같은 날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p>

■ 판결요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경우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한 것(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만을 양도비로 인정하였으나, 위 규정상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한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금액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지방세법)

종전 유권해석	새로운 심사례 (지방세심사2006-16, 2006.1.23.)
<p>○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회계처리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경우</p> <p>-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p>	<p>-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p>

■ 주요내용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자본화대상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문단 6).

종전의 유권해석<세정-1684, 2005. 7. 15외 다수>에 의하면 이렇게 기간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심사례<지방세심사 2006-16, 2006. 1. 23>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도록 규정(지령 §82의 3 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정하였다.